

입법예고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9.



농림축산식품부
검역정책과

1. 개정이유

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·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,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·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X-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(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)

- 1) (주요내용)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-ray 검색기,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·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
- 2) (개정사유) 현장검역 업무 수행 시 다른 기관의 시설·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수입 금지식물·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(안 별표1 개정)

- 1) (주요내용) 바나나뿌리썩이선충·감귤뿌리썩이선충 발생으로 인한 수입 금지식물에 Polyscias속 등 9속 1종을 추가 지정하고, 수입 금지지역에서 칠레·독일을 제외하도록 함
- 2) (개정사유)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‘수입 금지식물·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’을 현행화하는 것임

다. 별지 서식 문구 수정

-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(별지 제1호의3서식)
- 회수·소독·폐기·반송·반출·기타명령서 서식 개정(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1호의2서식)
- 국내지역 경유승인서(별지 제20호서식)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현장검역(휴대품 및 우편물의 현장검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X-ray 검색기, 검역 탐지동물 등 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.)

별표 1 제14호 후단 중 “Livistonia속”을 “Livistona속·벤자민고무나무(*Ficus benjamina*)·Polyscias속·Scindapsus속·Epipremnum속·Monstera속·Licuala속·Johannesteijsmannia속·Homalomena속”으로, “Anubias속”을 “Anubias속·Bucephalandra속·Cyperus속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4호의 금지 지역란 기호(-) 중 “중·남아메리카: 전 지역”을 “중·남아메리카: 전 지역(칠레 제외)”으로 하며, 같은 란의 기호(-) 중 “유럽: 벨기에·프랑스·독일·포르투갈·이탈리아·네덜란드·폴란드·슬로베니아”를 “유럽: 벨기에·프랑스·포르투갈·이탈리아·네덜란드·폴란드·슬로베니아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 중 “유의사항”을 “준수사항 Compliance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“유의사항 Remarks”를 “준수사항 Compliance”로 하며, 같은 뒤쪽 제2호 중 “이동할 것”을 “검역본부장이 정하여

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출발 전 관할 지역본부장·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이동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moved”를 “moved in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중 “consignments.”를 “consignments, following the procedures gazet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fter getting approval of the regional/district Office of APQA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중 “유 의 사 항”을 “준 수 사 항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중 “유 의 사 항(Remarks)”을 “준 수 사 항 Compliance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법 제12조,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서류에 의한 검역(이하 "서류검역"이라 한다) 2. 현장검역 3. 실험실정밀검역 4. 격리재배검역	제18조(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서류에 의한 검역(이하 "서류검역"이라 한다) 2. 현장검역(<u>휴대품 및 우편물의 현장검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X-ray 검색기, 검역 탐지동물 등 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.</u>) 3. 실험실정밀검역 4. 격리재배검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 1] 수입 금지 식물, 금지 지역, 금지 병해충

현행			개정안		
금지 식물	금지 지역	금지 병해충	금지 식물	금지 지역	금지 병해충
14. 아보카도 · 파인애플 · 여지 · Indigofera hirsuta · 테다 소나무 · Pinus elliptica · 강낭콩 · 오크라 · 수박 · 무 · 여주 · 고추 · 토마토 · 호박 · 멜론 · 부추 · 치자 · 칸나 · 차나무 · 커피 · 생강 · 알파파 · 후추 · 고구마 · 사탕수수 · 대두 · 옥수수 · 땅콩 (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) · 빈랑 · 코코넛야자 (싹이 난 묘를 포함한다) · Curcuma longa · 당근 · 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, 파초속 식물 · Calathea spp. · 근대속 식물 · Dioscorea spp. · 배나무속 식물 · Philodendron속 · Maranta속 · Stromanthe속 · Ctenanthe속 · Persea속 · Strelitzia속 · 자스민속 · Rhipis속 · Heliconia속, Agathis dammara, Staurogyne속 · 나사	- 북아메리카: 미국 · 캐나다 - 중·남아메리카: 전 지역 - 아프리카: 전 지역 - 아시아: 인도 · 인도네시아 · 말레이시아 · 파키스탄 · 필리핀 · 스리랑카 · 태국 · 브루나이 · 레바논 · 오만 · 싱가포르 · 예멘 - 유럽: 벨기에 · 프랑스 · 독일 · 포르투갈 · 이탈리아 · 네덜란드 · 폴란드 · 슬로베니아 -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지역: 오스트레일리아 (타즈마니아 주는 제외한다) · 팔라우 · 괌 · 미크로네시아 · 파푸아뉴기니 · 솔로몬 제도 · 폴리네시아 · 피지 · 하와이 제도	(생략)	14. 아보카도 · 파인애플 · 여지 · Indigofera hirsuta · 테다 소나무 · Pinus elliptica · 강낭콩 · 오크라 · 수박 · 무 · 여주 · 고추 · 토마토 · 호박 · 멜론 · 부추 · 치자 · 칸나 · 차나무 · 커피 · 생강 · 알파파 · 후추 · 고구마 · 사탕수수 · 대두 · 옥수수 · 땅콩 (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) · 빈랑 · 코코넛야자 (싹이 난 묘를 포함한다) · Curcuma longa · 당근 · 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, 파초속 식물 · Calathea spp. · 근대속 식물 · Dioscorea spp. · 배나무속 식물 · Philodendron속 · Maranta속 · Stromanthe속 · Ctenanthe속 · Persea속 · Strelitzia속 · 자스민속 · Rhipis속 · Heliconia속, Agathis dammara, Staurogyne속 · 나사	- 북아메리카: 미국 · 캐나다 - 중·남아메리카: 전 지역 (칠레 제외) - 아프리카: 전 지역 - 아시아: 인도 · 인도네시아 · 말레이시아 · 파키스탄 · 필리핀 · 스리랑카 · 태국 · 브루나이 · 레바논 · 오만 · 싱가포르 · 예멘 - 유럽: 벨기에 · 프랑스 · 포르투갈 · 이탈리아 · 네덜란드 · 폴란드 · 슬로베니아 -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지역: 오스트레일리아 (타즈마니아 주는 제외한다) · 팔라우 · 괌 · 미크로네시아 · 파푸아뉴기니 · 솔로몬 제도 · 폴리네시아 · 피지 · 하와이 제도	(현행과 같음)

말 (<i>Vallisneria</i>)속 · <i>Livistonia</i>속의 생식물의 지하부, 안스름속 식물의 삽수 · 접수 및 생식물의 지하부, <i>Anubias</i>속(잎 줄기를 포함한 생식물 전체)			말 (<i>Vallisneria</i>)속 · <i>Livistonia</i>속 · 벤자민고무나무(<i>Ficus benjamina</i>) · <i>Polyscias</i>속 · <i>Scindapsus</i>속 · <i>Epipremnum</i>속 · <i>Monstera</i>속 · <i>Licuala</i>속 · <i>Johannesteijsmannia</i>속 · <i>Homalomena</i>속의 생식물의 지하부, 안스름속 식물의 삽수 · 접수 및 생식물의 지하부, <i>Anubias</i>속 · <i>Bucephalandra</i>속 · <i>Cyperus</i>속 (잎, 줄기를 포함한 생식물 전체)		
---	--	--	---	--	--

신·구조문대비표

[별지 서식]

현행	개정안
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(앞쪽) 유 의 사 항 1.~3. (생 략) 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(뒤쪽) 유 의 사 항 Remarks 1. (생 략) 2. 소독·폐기·반송 또는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 In case of movement of the consignments for disinfection, destruction, return to the origin or taking out, the consignments must be <u>moved</u> any freight containers or closed cases or covered with plastic etc. to prevent spread of any pests from <u>the consignments</u>. 3.~5.(생 략)	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(앞쪽) 준 수 사 항 Compliance 1.~3. (현행과 같음) 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(뒤쪽) 준 수 사 항 Compliance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출발 전 관할 지역본부장·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이동할 것 In case of movement of the consignments for disinfection, destruction, return to the origin or taking out, the consignments must be <u>moved in</u> any freight containers or closed cases or covered with plastic etc. to prevent spread of any pests from <u>the consignments</u>, following the procedures <u>gazet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fter getting approval of the regional/district Office of APQA</u> 3.~5. (현행과 같음)
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의2서식] (뒤쪽) 유 의 사 항 1.~4. (생 략)	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의2서식] (뒤쪽) 준 수 사 항 1.~4. (현행과 같음)
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(앞쪽) 유 의 사 항 (Remarks) 1.~4. (생 략)	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(앞쪽) 준 수 사 항 Compliance 1.~4. (현행과 같음)